

제429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2일(화)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 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정된 안건

1. 2024회 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4
 가. 방송통신위원회

(09시03분 개의)

○**소위원장 조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방송통신위원회 2건 못 하셨잖아요. 오늘 그것만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때 못 한 게 3페이지 소송비 외상계약 관련 징계 필요 이것하고 9페이지의 팩트체크넷 관련 사업에 대해 조치 필요 등 2건이거든요. 이 2건만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3번부터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 3쪽의 3번 소송비 외상계약 관련 징계 필요 내용입니다.

국회가 예산 삭감 등의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외상계약의 일환인 미지급 방식으로 소송비를 지출한 문제에 대해서 징계를 하자는 황정아 위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구유형을 어떻게 할지 방통위 등에서는 다른 의견을 냈던 사항입니다.

다음 것도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까요?

○**소위원장 조인철** 예, 그러시지요. 2개 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자료 9쪽 보시겠습니다.

팩트체크넷 관련 내용입니다. 이것은 재단법인 팩트체크넷 관련해서 방발기금 예산을 이후에 일부 금액 환수조치와 함께 300%에 달하는 제재부과금을 부과한 내용이 좀 과한 측면이 있어서 징계 유형을 조금 달리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11페이지를 보시면 OTT 산업 관련인

데 이것은 결정은 하셨습니다만 방통위가 모든 내용을 다 수용했는데 그래도 예결위의 권고사항이 시정요구유형을 가급적이면 단일화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제도개선 또는 주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을……

○소위원장 조인철 잠깐만요. 그것은 왜 이야기도 안 했는데 막 하십니까?

일단 2건 먼저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3번 건 관련해서 방통위에서는 어디까지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정계만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정부 측 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일단 소위에서는 조금 낮춰 달라는 말씀……

○소위원장 조인철 정계만 빼고는 다 받겠다 그런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정계 이하……

○김현 위원 김현입니다.

2024년에 저희가 국정감사 후에 부대의견이 있었을 겁니다. 지난해 그 부대의견 혹시 갖고 계시나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지난해 부대의견은……

○김현 위원 참고로 위원들에게 나눠 주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부대의견이 있었어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금방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다른 분들 의견 없으십니까?

이해민 위원님.

○이해민 위원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빠른 진행을 원하셔서 지난번에 저희가 통과 못 시킨 2건을 양쪽 의견 다 들어 가면서 다시 좀 봤거든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저의 의견입니다—그때 최형두 간사님께서 제공해 주신 내용도 있고 해서, 이 안에는 방송심의 내용과 방송심의 때문에 쓴 소송비와 그다음에 이렇게 대응용 빅테크 관련된 소송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계를 유지하되 이 시정요구사항을 방송심의로 한정해서 여기 내용상 ‘이를 사실상 강요한 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징계할 것’의 범위를 ‘방송심의에 대한 소송’으로 한정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의견이고요.

그다음 것까지 얘기할까요?

○소위원장 조인철 예, 다 말씀하십시오.

○이해민 위원 9페이지 같은 경우는 방통위의 의견과 그때 저희가 나눴던 의견들을 종합해 봤는데 이것 또한 정계 유지를 하되 시정요구사항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제안드리자면 ‘당시 정계가 적절하지 않았으므로 재감사 및 재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정계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여기 시정요구 유형은 어떤 것이 되는 거지요?

○이해민 위원 정계를 유지하되……

○소위원장 조인철 유지하고?

○이해민 위원 예. 그 정계의 대상 시정요구사항 내용을 한 단계를 두는 거지요, 재감사 및 재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정계가 다시 이루어져야 함.

○소위원장 조인철 재감사해라?

○ 이해민 위원 예.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가 다시 이루어져야 함’ 이렇게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 소위원장 조인철 예.

○ 최형두 위원 최형두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논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소송이 법무부의 지휘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법무부의 지휘 없이 단독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 왜냐하면 국가 상대의 소송 일체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했던 것의 부당함에 대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을 둘러싼 결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하지 말라는 것이 당시 민주당의 계속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2인 체제를 하더라도 의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고 또 이미 의결한 상황에 대해서 조치 대상자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소송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법무부의 소송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서 방통위를 징계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사실 공무원에 대한 가혹한 징계다. 왜냐하면 이 2인 체제가 결국 모든 사태의 원인이었습니다. 방송심의 내용도 2인 체제 의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요, 전부 다 형식 문제입니다. 그런데 2인 체제에 대해서는 법원에 따라서 2인 체제 의결이 불가피했다고 인정한 법원도 있었고 2인 체제는 통상 우리가 5인 체제를 합의제 기구로 만들었을 때 상정했던 그 상례와 어긋난다. 그렇기 때문에 2인 체제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대부분 가처분 결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본안이 있지만 본안 역시도 2인 체제의 문제, 형식 문제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2인 체제를 가지고서 결정할 수밖에 없었느냐고 하면, 첫 번째 빅테크 관련된 문제는 우리나라 국내기업의 보호와 국내 법률의 준수를 위해 이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또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 다른바 공영방송사를 둘러싼 또는 방송사 심의 내용을 둘러싼 것은 그것이 법규에 따라서 또 임기가 끝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새롭게 임기를 시작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결정에 대해서 이미 임기가 끝난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서 2인 체제가 5인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원리와 맞느냐라는 법원의 의견에 의해서 전부 중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헌법재판소가, 이 이유가 전부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유 재판에서 다 검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인 체제를 통한 공영방송 이사의 임명 등등이 당시 민주당의 탄핵소추 사유였기 때문에 당시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입니까, 권한대행 그리고 김형두 재판관 등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2인 체제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국회는 3인이 남은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지 않느냐.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냐’ 이래서 당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국회의 책임을 제기하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전후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국회로 인해서 빚어진 국회에서 5인 체제를 구성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빚어진 사태의 여파로 이후 방통위원회가 불가피하게 결정 혹은 조

치해야 될 상황에서 2인 체제로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당사자들의 반발이 있어서 소송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소송 대응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자문에 의해서,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불법이나 위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2인 체제가 이 모든 법률 소송의 원인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제기한 소송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2인 체제라는 이유로 반소(反訴)가 들어와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서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서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아무런 법적인 절차 하자가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회가 공무원에 대한 가혹한 징계를 한 것이고 거꾸로 국회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법원의 사후 조치 같은 것을 나중에 받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부러 소송을 제기하고 누구를 망신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를 통해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인 체제라는 것은 국회가 5인 체제를 구성해 주지 않아서 생겼던 일인데 그렇게 해서 생겼던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 당사자에 대해서, 사실은 공무원의 파면·해임·강등 같은 심각한 공무원의 공직 생명을 끊는 것과 같은 이런 가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일부 책임 있는 문제를 몽땅 공무원에게 돌리는 아주 가혹한 처사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미스가 있어서, 안건을 상정도 안 하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김현 위원 시간이 많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예.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방송통신위원회

(09시15분)

○소위원장 조인철 의사일정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다른 분들.....

○최형두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는 전부 무효입니까, 다시 해야 됩니까?

○소위원장 조인철 아닙니다.

○최형두 위원 예,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지금 이 단면만 딱 끊어서 보면.....

○소위원장 조인철 또 하십니까? 정리된 것을.....

○최형두 위원 보면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국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고 또 5인 체제를 복원시켰다면 진작 없었을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모든 행위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일부러 공연하게 빅테크를 괴롭히거나 또는 방통위가 일부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방통위의 2인 체제 결정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반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부득이 법무부의

소송 규칙에 따라서 대응한 것이다.

○김현 위원 이제 그만 얘기하시고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이야기를 이제 마칠게요.

○소위원장 조인철 잠깐만요.

○김현 위원 너무 반복되는 얘기를……

○소위원장 조인철 잠깐만요.

다른 분 또 있으신가요?

다른 분 의견 없으시면 위원님 하십시오.

○김현 위원 2024년도 방통위 전체가 쓴 내용이 44건이고 방송심의 건이 30건이고 방송심의 외 건이 14건입니다. 예산안이 2억 3500만 원이었는데 결산으로 쓴 게 5억 5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미지급 소송 건수가 6건이고 미지급액이 42억 9000만 원이에요. 어느 공무원이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뛰어넘는 결산을 쓸 수 있습니까? 이게 지난해에 이미 2인 의결로 발생한 소송비용 지출이 부적절하다고 시정 및 제도개선을 하라는 게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부대조건이었어요.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법률 검토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 역시 부적절해서 시정요구하라고 한 건데, 그것이 그때는 국정감사 기간 안에…… 저희가 2024년도 결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정 제도개선이었는데 이번에는 결산이잖아요? 그 어떤 정치적·정무적 해석을 떠나서 책정된 예산의 결산을 이렇게 쓴다는 것은 이건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왜 정무적·정치적 판단이 개입됩니까? 이것을 그러면 해도 된다는 거예요? 편성된 예산을 뛰어넘어서 써도 된다는 그 전례를 남기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 그냥 숫자만으로 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올해 2025년 8월 기준으로 따지면 5억 2000만 원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누가 배상하나요? 누가 배상하나요, 이 문제를?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형두 위원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제가 좀 답변할게요.

○김현 위원 아니, 제가 답변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공무원은 청렴의 의무와 보고의 의무가 있고요 복종의 의무가 있는 것 압니다. 복종의 의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정을 할 때 적극행정이 있고요, 법을 준수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국회가 어떻게 어느 범위에서 이것을 봐주자는 얘기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법적인 2인 구조로 의결해서 소송비를 낭비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주장이고요. 현실적으로 2024년 결산에서 있는 이것, 예산액을 초과하는 돈을 쓴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정하는 이 자리에서 정무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소위원장 조인철 지금 계속 3번만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뒤엣것부터……

○김현 위원 예, 3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소위원장 조인철 예.

○김현 위원 그래서……

○소위원장 조인철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김현 위원 예, 이미…… 1분도 안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징계조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팩트체크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충분히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위원장을 포함한 정무직공무원과 공무원들이 이 7억 4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과징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무도한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재발 방지 차원으로라도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박충권 위원님 혹시 의견 없으십니까?

○**박충권 위원** 먼저 하십시오.

○**이훈기 위원** 저는 소송비 외상계약 관련해서는 여기 아까 44건 중에 특히 30건은 심의 관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백전백패예요. 아까 2인 체제도 그렇지만 백전백패인데 이것은 정말 소송 남발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외상으로 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모자라니까 여러 가지 외상을 한 거니까 어느 것을 외상으로 했냐는 사실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것은 엄격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고 봐요. 반복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송을 의도적으로 남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징계를 해야 된다고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팩트체크넷 관련해서도 문제가 이 정도로 드러났으면 징계를 해서 재발을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박충권 위원님.

○**박충권 위원** 우선 속기록에 좀 남기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3쪽의 외상계약 관련해서는 우리가 작년에 25년도 예산을 짤 때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해서 책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2인 체제의 소송 남발이다’라는 아까 이훈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원인을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번에 이 외상계약을 진행한 건들을 보게 되면 2인 체제에서 있었던 어떤 의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소송을 방통위가 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들에 대응한 거다.

그런데 정부기관이 불가피하게 소송비용을 집행하게 된 것을 이렇게 징계하는 것은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물론 정상적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예산이 없는데, 없어서 외상계약을 해서 진행한 것을 두고 징계한다는 것은 좀 과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소송비용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상계약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징계한다 그러면 외부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기관이 다 패소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9쪽의 경우에는 아까 이해민 위원님께서 ‘감사를 다시 진행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은 지난 소위 때보다 좀 한발 물러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300%에 달하는 제재부과금을 부과한 것 이 부분이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은 정상적으로 자기 업무를 진행한 거고 거기에서 5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라는 규정하에서 진행한 거기 때문에 공무원이 규정을 어기고 업무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징계까지 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국회라는 이 권력을 남용해서 보

복하는 그런 차원으로도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해서 아까 이해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감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징계 수위를, 그러니까 제재부과금의 퍼센티지를 좀 달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징계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최수진 위원님.

○최수진 위원 간단히 할게요, 앞서 얘기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냐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온 것에 대한 대응을 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소송뿐만 아니라 지금 유튜브나 다양한 방송심의 과정에서 생기는 것에 소송들이 같이 들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예산이 없다 그래서 대응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저는 직무유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법무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부처들이 합의된 가운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위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이야기를 다 하셨지요? 다 돌아가시면서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표결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드려 볼게요.

3번, 소송비용 외상계약 관련 징계 이 건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데 읽어 보면 똑같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건은 외상계약 문제가 아니고 이미 소송을 했는데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같은 취지는 아닙니다.

뒤엣것은 제가 봐도 하여튼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래서 외상계약 관련해서는—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저도 사실은 좀 세게 하고 싶지만 일단 2건에 대해서 합의를 봐야 해서 이것은 시정요구사항을 시정으로 낮추되 다만 우리 내용을 ‘사실상 강요한 자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할 것’ 이 정도로 수정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 9번은 징계로 그냥 가는 것.

○최형두 위원 9번이요?

○소위원장 조인철 예. 9번은 제가 봐도 너무……

○최형두 위원 9페이지, 팩트체크넷?

○소위원장 조인철 예, 두 번째 것. 그것은 제가 봐도 공무원들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앞엣것은 누군가가 ‘야, 해’라고 했는데 실무 공무원들이 ‘나 이건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징계를 하게 되면 시킨 사람이 징계를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밑에 실무자들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서 이 정도로 제안을 드립니다.

○최형두 위원 그러면 팩트체크넷 관련은 어떻게 한다고요?

○소위원장 조인철 그건 징계 그대로 가고요.

○최형두 위원 그것도 역시 실무자들이……

○소위원장 조인철 이것은 실무자들이 잘못했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재

량 범위를 벗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재량 범위가 있는데 위에서 지키면 그 재량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기준의 멀쩡한 기준을 놔두고 새로운 기준을 바꿔 가지고 그걸 적용해서 징계를 때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공무원이 아무리 재량 범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지나쳐 보입니다. 그래서 뒤엣것은 그냥 징계를 가고 앞엣것은 시정 정도로 낮추고 대신에 진상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라 정도가 어떨까 싶습니다.

○최형두 위원 저는 위원장님의 고심을 이해합니다. 당사자들이 여기서 좀 마지막 변설을 하거나 그럴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적극적으로? 관계 없습니까?

○소위원장 조인철 그것은 저희가 결정을 하면 되지 그분들을 모셔다가 들을 이야기는 아니고. 징계를 내리는 사람은 공무원법에 따라서 부처 내에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위나 이런 것까지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형두 위원 알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조인철 예.

○최형두 위원 잠깐만, 제가 이야기를 덜 마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요 공직을 역임하신 소위원장님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앞의 외 상계약 부분.

9페이지의 연번 3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공무원으로서는 지금 이런 구체적인 절차 문제를 따지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초에 제도개선이라는 의견을 냈고 김장겸 위원도 주의 의견을 냈고 김현 간사님도 시정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징계는 너무 가혹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김현 위원 시정 아닌가요, 지금?

○소위원장 조인철 뒤엣것은 징계, 앞엣것은 시정.

○최형두 위원 앞엣것은 시정이고.

그래서 9페이지 연번 3번도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건 현재에 있는 규정을, 왜냐하면 아마도 제가 제도개선을 낸 까닭은 현행의 사업 수행 방식이라든가 또 사업비가 충분하게 인건비를 보상하지 못하는 그런 체제여서 생긴 편법 이런 것들을 그냥 현실에 있는 징계 조항으로, 규칙 조항으로 적용했던 것이 가혹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제도개선 의견을 내었는데 제도개선이라든가 주의라든가 이런 항목으로 낮추시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관계 공무원이 와서 보고할 때 잘못 됐다라고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제도개선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면 본안으로 가는데 그때 여러 차례, 저희가 전체회의 때도 보면 민간기구에서 했어야 될 일을 정부가 해서 생긴 문제다. 그리고 부당징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었습니다, 여기 와서 보고했던 담당자가. 본인의 실책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마치 제삼자인 타자의 얘기처럼 얘기를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책임감이 없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징계를 통해서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그냥 협동조합을 하는 사업자는 거의 망하는 수준이고 바로잡는 과정도 매우 지난한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서…… 적어도 국회에 와서 보고하는 공무원들이 무책임한 태도로 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박충권 위원님.

○**박충권 위원** 소위원장께서 합리적인 제안을 주신 것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3번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3쪽에 있는 것—그리고 9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민 위원님 안을 따르면 어떨까, 그쪽으로 가면 어떨까……

○**소위원장 조인철** 이해민 위원 안이 징계입니다.

○**박충권 위원** 징계인데 감사 결과를 보고 그 조치사항을 보고 나서 징계 수위를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소위원장님 뜻도 있으시니까……

제 생각에는 그겁니다. 우리가 국책과제를 수행할 때 있어서 인건비를 책정을 하게 되면 책정한 대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또 다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건비는 높게 잡아 놓고 실제 지급액은 적게 해서 전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감사에서 걸리는 사안이 맞습니다.

그런데 300%라고 하는 제재부과금이 좀 과하고 너무 과도하게 스타트업을 상대로 파멸에 이르는 수준의 징계를 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조절하면 되는 것이지 담당 공무원을 징계까지 한다라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걸 시정조치하고 나서 이 징계 수위를 달리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이해민 위원님.

○**이해민 위원** 이해민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나서 가만히 있으려고 했었는데 무언가 지금 요점을 잘못 잡고 계셔서……

이건 300% 자체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그리고 전용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빠띠는 분명히 정부하고 한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공무원이 다른 기준을 의도적으로 적용하는 바람에 이 문제가 생겼고요. 제가 아까 전에 제안을 재감사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은 재감사를 하게 되면 100% 이걸 문제를 일으킨, 아까 위원장님 말씀을 하신 그 공무원의 책임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걸 오히려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요.

300%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전용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공무원이 원래 협약서대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협약서대로 진행을 했는데 그것 기준을 바꿔서 적용을 하면서 표적 감사를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징계는 계속 유지를 하고요.

아까 전에 제가 제안을 드린 것 또한 징계를 다시 생각을 하자, 이게 아니라 맨 마지막의 내용은 ‘재감사 및 재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할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 유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요청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잠깐만요. 계속 또 반복되는 이야기여서……

지금 반대하시는 분이 두 분입니다.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이 박충권 위원님하고 최 간사님, 두 분만 반대하시는 거거든요. 표결 들어갈까요?

계속해 봤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충권 위원 한말씀만 간단하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조인철 예, 그러십시오.

○박충권 위원 기준을 바꿨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팩트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계약서상에는 소프트웨어 분야 종사자들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임금을 사업계획서상에 적어 놨지요. 적어 놨는데 그것보다 낮은 임금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팩트라는 거지요.

○이해민 위원 아니에요.

○박충권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이해민 위원 감사 결과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기준을 다시 적용한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지급하라고 해서……

○이해민 위원 이것은 표결 부탁드립니다.

○박충권 위원 그렇게 사업계획서에 적어 놓고 실제로는 적게 줬다라는 게 그게 팩트거든요.

○이해민 위원 아닙니다.

○박충권 위원 그게 팩트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래서 아까 안 들으신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최 간사님하고 박충권 위원님만 반대하십니다. 표결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최수진 위원 나도……

○최형두 위원 아니, 내가 보니까 진상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지금 이해민 위원님 말씀은……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저번에 방통위에서 왔을 때도 제가 몇 번 물었지 않습니까? 기준을 왜 바꿨느냐, 기준을 바꾼 것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취지로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도 안 했고 아무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시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충권 위원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이해민 위원 아니, 팩트도 말씀을 한 가지를 더 드리자면 이것 감사 결과로 시청자미디어재단도 징계가 내부적으로 들어갔었습니다. 당시에 기준을 바꾼 것을 내부감사 결과 징계를 내릴 때……

○박충권 위원 기준을 바꾼 게 아니고요.

○이해민 위원 아니요, 아니요.

○박충권 위원 여기 보십시오. 정확하게 보십시오. 이게 결론입니다.

○이해민 위원 이것은 방통위 자료고요.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이걸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여쭤잖아요.

○이해민 위원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소위원장 조인철 여줬는데 자기들이 부정을 안 했어요.

○이해민 위원 이것을 시청자미디어재단 안에 있는 사람을 징계를 할 때 그들이 이 기준을 바꿨다고 이미 내부적으로 인정을 하고 징계를 했습니다, 내부감사에서 징계를

할 때. 그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원하시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볼 수 있게. 공유 좀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조인철 공유해 주시고요.

그러면 표결할까요? 아니면……

○최형두 위원 사실관계가 좀 엇갈리는 부분을 좀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민 위원 여기 다……

○소위원장 조인철 다 스터디 많이 하셨고 이미 그분들이 와서 엄청 보고를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쪽 분들 괴롭힘을 당하셨을 거예요, 설득을 하시려고 방통위에서.

○최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저도 이해민 위원 말을 믿겠고 만약 아닐 경우는 좀 시정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열어 주시고 현재는 이 상태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예.

○최수진 위원 저희가 확인 한 번 더 마지막에 딱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런데 이게 한번 징계가 내려지면 그게 번복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최수진 위원 불가능합니까?

○최형두 위원 예, 안 되지요.

○최수진 위원 오늘 결론을……

○소위원장 조인철 오늘 결론을 내려야 돼서……

○이해민 위원 그러면 표결하시지요.

○최형두 위원 저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내막을 알아보고 일단은 예컨대 주의라든가 시정으로 해 두고서 그에 따라서 추후 조치를 더 하라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소위원장 조인철 그렇게 하실 바에는 그냥 징계를 두고 나중에 보신다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김현 위원 오늘 결정해야지 전체회의에서 이것 처리하지요.

○최형두 위원 그게 아니라 징계로 하고 나면 그 징계가 회복이 됩니까?

○김현 위원 전문위원님, 의견 좀 주시지요.

○최형두 위원 아무튼 저희들이 다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는 당시에 주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용도 외 사용이었고 사업과 관련한 도서 구입으로 했고 그다음에 주차료 혜택 정산 등 자잘한 부분도 있는데, 주요 내용은 인건비는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과다 계상 함으로써 그 차액만큼 용도 외 사용했다라는 게 내용이고. 이것이 이제 공무원들이 규정한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결과로 보자면 이해민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스타트업 하나를 완전히 어렵게 했다는 그 정황도 뚜렷한 만큼,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바로 징계로 갈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그 규정에 따르지 않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해도 된다, 이런 여지를 남겨 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모든 것이 잘못된 것으로 단정하고 바로 징계로 가는 것보다는 시정과 또는 진상조사 이후의 추후 조치 이런 정도로 하면 어떨까요?

○소위원장 조인철 어떻습니까?

○이훈기 위원 표결하지요.

○소위원장 조인철 예.

○박충권 위원 저는 자칫 지금 이해민 위원님 주장하신 것 그리고 방통위가 지금 보내온 자료, 만약 이게 거짓이라고 한다면 방통위는 이것을 거짓 보고한 것만으로 또 징계 조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자료를 제출했다라는 것은 좀 의구심이 남고 그런 상황에서 징계를 하게 되면 자칫 우리가 직권을 남용하게 될 수도 있는, 직권을 남용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한 공무원들을 과도하게 징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떤 특정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들의 민원을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그 편에 서서 공무원들을 이렇게 보복성으로 징계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이게 지금 방통위에서 제출한 자료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방통위에서 제출한 걸 그대로 읽어 보면 ‘인건비는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소프트웨어 기술자는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과다 계상했다’ 이렇게 지적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가 문제라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기준을, 인건비 산정하는 게 자기들이 그냥 항상, 실제 인건비로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사람이 다르니까. 그래서 평균임금이거나 뭘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너희들 왜 실제 임금으로 안 하고 이렇게 했느냐’라고 지적을 하면서 기준을 나중에 바꾼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입장은.

그러니까 실제 급여로 산정을 해서 다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약서 낼 때.

○박충권 위원 실제는 사업계획서 낼 때 다 인건비 책정한 만큼 그대로 통장에 꽂힙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이렇게 적정한 기준을 했을 텐데 나중에 ‘너희들 왜 실제 임금으로 계산 안 하고 평균임금으로 했어?’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이것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계약서상에 뭐라고 써 놔서 그걸로 계약을 했으면 그걸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실제 급여가 아니고 평균임금으로 했다라고 하는 게 불법적인 사항이었다라고 하면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평균임금으로 한 게 불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당시의 관행이나 기준에 따라서 한 거다.

그런데 갑자기 와서 ‘너희들 왜 평균임금으로 했어, 실제 급여로 하지?’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지금 문제를 제기해서 이것은 징계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박충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봅시다.

국책과제 같은 것을 수행할 때 박사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금은 어느 정도로 책정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얼마 정도 된다 이렇게 기준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을 얼마 줘야 되느냐’ 하니까 ‘그 분야 업계의 평균

임금 정도로 책정을 해서 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그게 기준인데 그러면 사업계획서상에 내가 사장이면 사업계획서 쓸 때 누구는, A씨는 얼마 B씨는 얼마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그게 평균임금 수준으로 적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실제 지급한 금액은 이것보다 적게 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만큼 다른 데다 용도 외 사용을 한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감사에 걸리는 겁니다.

○최형두 위원 그러니까 더 준 게 아니라 덜 줬네?

○박충권 위원 덜 준 거지요.

그러니까 책정을, 여기 사업계획서상에 적어 놨으면 그대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 놓고 그것보다 적게 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그런 것은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고. 거기까지 행정부에서 하나하나 따져 가지고 '너 실제 지급했냐' 이것은 과도한 사항이에요. 제가 보면 그것까지 관여하는 것은 과도한 거고.

○김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2019년도에……

○소위원장 조인철 잠깐만요.

제가 그것을 계속 디펜스하고 할 필요는 없어 보여서 그냥 표결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방통위 직원한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소위원장 조인철 제가 제안한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최형두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요?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2건에 대해서.

(「따로따로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최형두 위원 따로따로 하시지요, 사안이 다른데.

○소위원장 조인철 따로따로?

그러면 앞엣것 반대하시는 분?

다 반대입니까?

○박충권 위원 앞엣거는 찬성.

○소위원장 조인철 찬성, 여기는 오케이.

그다음에 뒤엣것.

○박충권 위원 뒤엣것은 반대입니다.

○최형두 위원 뒤엣것은 다시 재고해야 됩니다.

○박충권 위원 차라리 방통위 직원 한 분만 부르는 게 어떻습니까?

○최형두 위원 이것은 제가 그래서 제도개선이라는 의견을 냈던 겁니다.

○김현 위원 없어진 조직에 무슨 제도개선이에요?

○최형두 위원 아니지, 이런 문제를……

○소위원장 조인철 다시 표결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팩트체크가 문을 닫았는데, 이것 때문에.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조용히 해 주세요.

표결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최형두 위원 반대합니다.

○최수진 위원 저는 기권.

○소위원장 조인철 기권.

두 분 반대, 한 분 기권, 세 분은 찬성, 그러면 찬성.

○김현 위원 4명이지요, 4명.

○소위원장 조인철 예, 저까지.

그러면 정계, 앞에는 시정,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최수진 위원 잠깐만, 하나 더 추가로 나온 게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다른 건인데……

○소위원장 조인철 예.

○최수진 위원 잠깐만요, 아직 들어오지 말라고.

10페이지의 4번 봤는데 이것 지난번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제도개선으로. 그래서 이해민 위원이 왜 이것을 냈을까 생각하니까 그때 회의에 안 들어오셨더라고요,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그때 제도개선으로 결정이 난 건입니다. 그때 소위원장대리로 김현 위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상한 것 같다 해서 제가 그때 회의록을 다시 한번 뒤져 봤더니 제도개선으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의견드립니다.

○김현 위원 언제 논의했다는 거지요, 이게?

○최수진 위원 2024년 9월 9일 날 했구요.

○김현 위원 그거랑 다르지요.

○최수진 위원 이것 이미 했던 사항입니다.

○김현 위원 그것은 2024년도고 지금……

○최수진 위원 똑같은 건입니다.

○박충권 위원 같은 건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때 결정이 난 건데 왜 또……

○김현 위원 아니, 그런데……

○소위원장 조인철 뭔 말이에요? 2024년도 것이 이랬으니까 이것을 또……

○최수진 위원 그때 그것을…… 똑같은 건이에요, 똑같은 건.

○소위원장 조인철 다를 수도 있지요.

○최수진 위원 아니야, 똑같은 건이에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김현 위원 똑같은 건인데 이게 왜……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그러니까 시정요구유형은 바뀔 수도 있다고요. 내용이 똑같더라도 시정요구사항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김현 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최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김현 위원 결산이 아닌데, 이때가 결산이 아니에요.

○**소위원장 조인철** 결산이었던 어떻든 간에 그때는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했더라도, 다른 요구 유형을 했더라도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부처까지 다 수용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굳이……

○**최수진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나……

○**김현 위원** 있지요, 있지요.

○**최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이것도 분명히 기록에 남겨 둡시다, 최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최수진 위원님 이야기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록에 남겨 주십시오. 발언을 하셔야 속기록에 남는다고요.

발언하십시오.

○**최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발언하시면 돼요.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최수진 위원님이 발언하시라고요.

○**최수진 위원** 똑같은 건으로 지난번에 제도개선으로 끝났고요. 그때는 이해민 위원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훈기 위원님……

○**최형두 위원** 그게 몇 월 며칠이에요, 언제?

○**최수진 위원** 2024년 9월 9일 소위에서 이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최수진 위원**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회의록에 있습니다, 분명히.

○**김현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이해민 위원** 그리고 지금 자꾸 제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를 강조하시는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당시에 출장으로 사보임해서 다른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최수진 위원** 맞아요, 맞아요.

○**이해민 위원** 그것까지 밝혀 주세요. 이걸 계속해서 제가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다 말씀하셨습니까?

○**최수진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구글과의 관계나 상황들이 상황적으로 되게 어려웠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그때 변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도개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제가 정리할게요.

○**김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이름을 얘기했잖아요.

○**소위원장 조인철** 그랬어요?

○**김현 위원** 제가 뭘 하고 있을 때 결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얘기는 2024년도 결산이 아니기 때문에, 주장이지요. 그리고 지금 이 건이 류희림 위원장이 위증죄로 고발된 내용입니다, 해외출장 관련 변상 필요하다는 것은. 그런데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그 이후에도 국정감사, 9월 9일이면 국정감사 전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편성한 예산은 2024년도 결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것은 제도개선 필요하다라는 주장이고요, 주장이고.

그래서 지금은 2024년도 결산에 반영하기 위한 시정요구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문제

입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상 요구입니다.

○최수진 위원 아니, 똑같은 결산에 대한 얘기가 맞고요.

○김현 위원 그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 얘기지요.

○최형두 위원 다음에, 또 하나……

이 안도 지금 논의합니까?

○김현 위원 결정이 난 거예요.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요, 잠깐만요.

이미 결정이 난 거고 제가……

○최형두 위원 난 거라고요?

○김현 위원 받아들인 거예요.

○최형두 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했지?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금 구글이라든가 우리 요즘 걱정하는 허위·조작 뉴스나 대부분 소셜미디어 또 빅테크와 관련된 알고리즘 관련된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을 상의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다. 그런데 간 사실…… 구글 같은 것도 만나면 안 됩니까? 가서 방문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런데 그 출장의 내용을 본인의 변수와 무관하게 그냥 그것이 임기 앞두고 놀러간 것이다 단정짓고서 이렇게 해 버리면 그래서 출장 간 것을 변상하라고 그러면 앞으로 어느 공직자가 이렇게 출장 갈 수 있겠습니까?

○김현 위원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내용이 놀러갔다고 지적한 게 아니라 삭제·차단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했지만 담당자를 만나지 못했고, 그다음에 싸웠고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게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그다음 당사자 확인했던 절차가 다 진행됐던 거지요.

○소위원장 조인철 정리해 주시고요.

이것은 이미 논의가 끝난 사항이고.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2024년에 있었다 해서 똑같은 시정요구 유형에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다시 가는 거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재논의 안 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아니, 이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현재 물려난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너무 쉽게 한 개인의 전직 공직자에 대해서 개인 변상으로 하는 게……

○김현 위원 그건 위증죄로 고발되어 있는 상태예요.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이미 다 논의 끝난 사항이고요.

진행해 주세요.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최형두 위원 진짜 너무하네, 사람들끼리.

○김현 위원 사람들이 너무하네라고, 지금 속기록에 남겨질 거예요.

○최형두 위원 남겨야지. 내가 남기라고 한 소리예요, 지금.

○김현 위원 사람들이 너무하네라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최형두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무원들도 부적절해요. 이것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면 다음 기관장은 어떻게 하라고.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의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에 대한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최형두 위원 징계는 없는 겁니까?

○김현 위원 징계해야지요.

○소위원장 조인철 아까 했었잖아요.

○최형두 위원 시정 의견만으로 말씀하셔서……

○소위원장 조인철 시정요구 유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직무대리와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 현 박충권 이해민 이훈기 조인철 최수진 최형두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이재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기획조정관 성종원

방송정책국장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곽진희

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